

을 컨테이너항만부문에 적용한 품질경영의 원천과 활동 그리고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國籍 LNG船 運賃構造에 관한 實證研究

(船舶金融 및 運賃分析 中心으로)

해운경영학과 이승
지도교수 안기명

本論文의目的是韓國가스公社와海運船社가相互協力하여國際的이고資本集約의인海運및造船產業의特性을最大로活用함으로써치열한國際市場에서모두가發展할수있도록LNG船海運運賃構成要素들의競爭力を持續적으로確保할수있는分析方案을提示는데있다.

이를위하여海運運賃構成要素들과關聯된內部外部要因을分析하고,특히海運船社가유리한金融條件을가진金融源泉을이용하여LNG船을確保하도록하여資本費側面에서國際競爭력을높일수있도록既存國內外船舶金融에대한資料의史的考察을通하여主要船舶金融의條件과그와관련된國內規定및制度의特性을把握하고,이를通하여船主와金融提供者간에金融契約締結때注意해야하는사항을導出하고자한다.

또한國際的으로는開放經濟體制와더불어,각종協約과協定遵守義務가強化되고있는環境에서韓國가스公社가全般的이고綜合의인國籍LNG船事業에대한事例研究를通하여國籍LNG船海運서비스의效率화및質的向上이가능한方法을導出하고,船舶確保側面에서適切하게活用할수있는對應方案을미리研究할수있는契機를마련하는데있다.

본논문의주요구성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第2章에서는國籍LNG船事業의理解를돕기위해天然gas와LNG船에대한歷史的記錄과全般的現況을살펴보았다.第3章에서는韓國가스公社와海運및造船產業과의關係에대한analysis으로韓國가스公社의設立背景과海運및造船聯關業務을韓國가스公社의國籍LNG船事業즉,海運서비스發注事例를通하여考察하였으며海運運賃構成要素內容과船舶仕樣management에대한説明도並行하였다.

第4章에서는船舶確保와關聯하여막대한所要資金을外部에서調達하기위하여一般的으로사용되는船舶金融에 대하여살펴보았으며,특히船舶金融과관련하여船舶金融의資金源泉,國內船舶金融의發展段階와內容,國內制度,關聯國內外協定規定,船舶金融契約書그리고向後研究되어야할部分에대하여學術的考察을並行함으로써船舶金融에대한全般的理解가可能하도록하였다.

第5章에서는海運運賃에대한全般的分析에앞서海運船社의國際競爭力側面에서海運運賃의重要性,學術的側面에서海運運賃決定理論에대하여研究하였으며,海運運賃構成要素인資本費,船舶經費,運航費그리고利潤에대하여國籍LNG船을事例를考察하였다.

第6章에서는國籍LNG船의海運運賃構成要素를計量的으로分析하였으며,各要所別比重및運賃要素相互間에미치는影響에대하여假說을設定하고檢證하였다.특히海運輸送事業環境變化가各海運運賃要所에미치는影響과運賃構成要所간의相互關係를보다正確히分

析할 수 있도록 主要 環境變化를 反映할 수 있는 '變數利用 國籍 LNG船 輸送運貨 研究模型'을 具體化 하였을 뿐만 아니라 計量的 分析道具인 '標準 輸送運貨 算出 시뮬레이터'를 自體의으로 設計, 完成한 뒤 活用함으로써 向後 關聯 業務 推進時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海運運貨과 8個 主要 運貨 構成要所간의 關係를 多重 回歸分析을 通하여 一次 方程式으로 解釋함으로써 輸送運貨 原價管理의 計量化 및 學術的 研究가 보다 활발하게 進行될 수 있는 土臺構築 契機를 마련하였다.

第7章에서는 本 研究의 主要 内容을 要約하고 結論을 導出하였으며, 本 研究의 限界 및 向後 研究課題를 제시하였다.

즉, 本 研究의 結論은 다음과 같다. 現在 우리 나라의 國籍 LNG船 關聯 當事者들은 그 동안 國내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事業을 遂行했으나 國籍船 優待政策이었던 國籍船 保有獎勵制度나 指定貨物制度가 1999년 1월 1일부터 廢止되는 등으로 特徵되는 新しい 時代의 變化를 要求 받고 있다.

더욱이 1997년 11월에 發生한 國內 外換危機 以後는 그 동안 享有하였던 事業環境 마저도 維持할 수 없게 되었으며, 韓國가스公社 역시 現在 進行중인 가스產業 構造改編 및 韓國가스公社의 民營化 計劃은 貨主로서의 韓國가스公社의 位置와 地位를 全般的으로 變化시키는 要因이므로 이와 관련한 檢討가 要請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를 通하여 韓國가스公社과 海運船社가 相互協力하여 國際的이고 資本集約的인 海運 및 造船產業의 特性을 最大로 活用하면서 치열한 國際市場에서 모두가 發展하도록 LNG船 海運運貨 構成要素들의 競爭力を 繼續 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進路研究와, 全般的이고 綜合的인 國籍 LNG船 事業에 대한 事例研究를 通하여 國籍 LNG船 海運서비스의 效率的이고 經濟的인 管理方案의 可視化 및 質的 向上이 가능한 方案을 導出하였다.

方案의 方向 및 内容에서는, 優先的으로 韓國가스公社를 包含한 LNG 輸送事業 關聯 當事者의 天然gas, 海運 및 造船으로 代表되는 既存 固有事業 推進內容 및 그 동안 蓄積된 關聯 經驗과 知識을 體系的으로 共有할 수 있는 相互理解 土臺를 持續的으로 維持하여야 하면서, 國內 國籍 LNG船 事業施行者 및 參與者로서의 力量點檢을 始作으로 하고 LNG船 輸送運貨 水準 決定에 있어서 比重이 큰 船舶金融과 關聯하여 船舶金融의 源泉, 利用實態 考察, 船舶金融時 考慮되어야 할 諸般條件과 國內制度와 規定, 그리고 船舶金融 契約書에 대한 考察過程을 거쳐, 本格的인 輸送運貨 分析技法 및 道具活用 方法 確定에 이르는 國籍 LNG船 輸送運貨 分析을 위한 接近方向을 提示하였다.

아울러 輸送運貨과 관련한 豐富な 理論에 대한 研究를 通하여 輸送運貨의 分析이 보다 客觀的이고 明確하게遂行될 수 있는 論理體系를 마련하였다.

輸送運貨 分析과 關聯하여 既存 國籍 LNG船의 固有欲을 單純分析 하기보다는 수년간의 主要 變動內容을 反映할 수 있도록 標準 研究model과 分析 시뮬레이터를 自體의으로 製作하는 등 分析內容이 單純한 學術的인 實態分析에서 벗어나 實務現場에서도 分析內容이 積極的으로 活用되고 向後에도 계속해서 活用될 수 있도록 하였다.

多變量 回歸analysis 技法으로 分析한 結果를 보면, 輸送 運貨率에 대하여 契約船價가 相關關係가 가장 크며, 그 다음 債還 利子率, 建造中 利子率 그리고 燃料費 價格 順序였다. 한편 自己資本 投資率과 換率은 逆 相關關係를 갖으며 나머지 變數의 相關關係는 미미한 水準으로 分析된다. 이를 回歸方程式을 導出하였으며 向後 輸送運貨 分析 및 豐測에 많이 活用될 것이다.

한편 輸送運貨 構成要素中 資本費의 경우 높은 比重에 맞는 新しい 運貨管理 金融技法의 신속한 導入 必要性이 새롭게 提起 되었다. 이를 위해서 多樣한 研究와 最新技术 開發에 關聯 當

事者의 長期間에 결친 力量集中이 必要한데, 이는 開發能力 不足보다는 類似 先例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獨島 領有權問題의 國際法的 考察

해사법학과 윤 병 두
지도교수 김 영 구

최근에 들어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0월 26일 發效됨으로써 세계의 연안국들이 앞다투어 배타적경제수역을 宣布하며 해양의 管轄權을 확대해 감으로써 인접국가간 島嶼 領有權을 두고 紛爭이 深化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북방4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간, 조어도/센카꾸를 두고 중국과 일본간,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간의 도서영유권 논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일간 영유권 논쟁이 일고 있는 독도는 울릉도의 附屬島嶼로서 于山國이 新羅에 復屬된 以來 高麗, 朝鮮을 거쳐 現在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나 國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1. 18 한국의 平和線 宣布以後부터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이후부터는 종래의 현상유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直線基線의 宣布' '韓國漁船拿捕'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독도로부터 관할범위를 기산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등 독도문제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문제로 대두시켜 한국의 영역주권을 정면으로 집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상유지적, 회피적 자세로 미온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급기야는 1998년 9월 24일 韓日漁業協定이 최종 타결시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치 못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자원보전을 위한 공동적 잠정조치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국의 獨島 爭取를 위한 段階的 戰略에 휘말려 가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바 이에 '99년 韓日漁業協定'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유권에 관한 既存의 독도관련 문헌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리하여 독도령유권 논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로서 일본 백기주태수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안용복사건과,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의 영토라고 밝힌 1667년 일본 덕천막부에서 판찬한 '隱州視聽合紀', 독도를 조선에 속한 것으로 취급한 일본해군성수로부의 '일본수로지' 제6권(1911년), 제10권(1920년),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1933년), 역사지리(제55권, 제6호)에 취급된 오게바따 셋고의 논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한관계에 대하여'(1930년), 시마 가즈모리의 '신편일본역사지도'(1933년), 사꾸모 순나이의 '조선과 만주안내'(1935년), 일본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도'(1936) 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법적 근거로서는 1905년 일본 도쿄현의 독도편입의 부당성,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전후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일본의 제소도의 귀속문제에 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일연의 조치, SCAPIN 제677호,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정, 내용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 80%가 독도, 즉 일본명으로 죽도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며 중국과의 조어도 문제와 러시아와의 북방4도 문제와는 달리 일부 서해안의 어민이나 극우주의자외에는